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31호
2. 발 의 자 : 김규남 의원 등 18명
3. 발의일자 : 2025년 0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미국과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이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
-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중기복무,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감면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발의됨.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및 관람료 감면 현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운영 중인 공공시설임(개관 2017.05.19.).

<과학관 개요>

| | | |
|--------|--|---|
|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
| ○ 규모 | 부지면적 25,875㎡ / 연면적 12,376㎡ / 전시면적 4,260㎡ | |
| ○ 총공사비 |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
| ○ 예산현황 | 약 46억 6천 1백만원(2024년 기준) | |
| ○ 주요시설 | | |
| 층 별 | 면적(㎡) | 주요 시설 |
| 옥 상 | 3,429.97 | 하늘마루, 데크쉼터, 태양광 시설 |
| 지상 3층 | 1,528.09 | 기획전시실(X), 상설전시실(R), 북&톡, 교육실(1,2,3), 교육지원 행정사무실 |
| 지상 2층 | 3,429.97 | 상설전시실(B,O,Y), 3D 스페이스, 천체관측실, 사무실 |
| 지상 1층 | 4,217.34 | 상설전시실(G,Y), 사이언스홀, 안내/매표소, 메이커스튜디오(별관) |
| 지하 1층 | 3,201.02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직원휴게실, 샤워실 |

- 이후 AI, VR/AR 등 최신 로봇과학기술 체험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분관으로 개관되어 운영 중임(개관 2024.08.20.).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
- 규 모 : 부지면적 2,500㎡ / 연면적 7,308㎡ / 전시면적 1,260㎡
- 총공사비 : 416억 9천 7백만원(시비 100%)
- 주요시설

| 층 별 | 면적(㎡) | 주 요 시 설 |
|-------|----------|-----------------------|
| 지상 4층 | 856.46 | 기획전시실, 오픈랩, 오픈스페이스 |
| 지상 3층 | 1,154.19 | 상설전시실, 이플리에 |
| 지상 2층 | 1,081.22 | 다목적실 1,2,3, 사무실, 세미나실 |
| 지상 1층 | 995.38 | 로비, 안내데스크, 편의시설 등 |
| 지하 1층 | 1,427.41 | 주차장, 방재실 |
| 지하 2층 | 1,793.73 | 주차장, 기계, 전기실, 수장고 |

- 한편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 조례 별표에 따라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2천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동 과학관의 개관 후 2025년 2월까지의 총 관람객은 82만 4천 635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약 6억 1천 8백여만원임.

<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도 | 2021년 이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02. | 합계 |
|--------|----------|--------|--------|--------|---------|----------|---------|
| 관람객수 | 412,623 | 33,717 | 66,589 | 99,871 | 169,619 | 42,216 | 824,635 |
| 관람료 수입 | 347,610 | 38,218 | 70,394 | 79,018 | 63,573 | 19,232 | 618,045 |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포함

- 그리고 동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는 과학관의 관람료 면제 및 감면(50%)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관 이후 2025년 2월까지 총 38만 2천 18명이 약 5억 2천 5백만원의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았음.

1)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과학관 개관 이후 무료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

| | 19세 이하 | 다동이 | 장애인 | 경로우대 | 국가유공 | 시장인정 | 기타 | 합계 |
|-----|---------|--------|-------|-------|------|--------|--------|---------|
| 관람객 | 239,264 | 28,562 | 6,865 | 5,400 | 804 | 29,403 | 71,720 | 382,018 |
| 비율 | 62.6 | 7.5 | 1.8 | 1.4 | 0.2 | 7.7 | 18.8 | 100.0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포함

※기타: 공무수행, 서울특별시명예시민, 20명 이상 단체 인솔자 등

3.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의 적절성 검토

- 안 제6조는 관람료 면제 대상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²⁾’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대군인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³⁾, 중기복무 제대군인⁴⁾, 의무복무 제대군인⁵⁾이 모두 포함됨.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12. (생략)</p> <p><신설></p> <p>13. (생략)</p> <p>② (생략)</p> |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p> <p>14. (현행 제1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3)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5)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현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취업·교육·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대부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한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과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전역한 자에 한해 일부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관).
- 특히 군가산점제 폐지(1999년)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부재는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증폭으로 이어져 병역의무에 대한 군 장병 및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⁶⁾
- 이러한 점에서 의무복무 군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후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참여 시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지원 연령 상한 적용, 복무 중 부상 청년에 대한 우대,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제대군인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6) 이아영 외(2023). 「의무복무(단기복무 장교·부사관 포함) 제대군인 지원방안」, 국가보훈부.

<서울시 제대군인 지원 사업>

- ▶ 청년⁷⁾정책 참여시 의무복무 기간을 연령 상한하여 적용(최대 3년)
- ▶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영웅청년주택⁸⁾ 공급
- ▶ 병역명문가⁹⁾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및 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중기복무, 의무복무를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과학관 관람료 면제라는 사회적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과학관의 구체적인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서울시가 그간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에 대한 과학관 관람료 면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병역 존중 문화 확산은 물론 과학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약 1만 8,006명의 관람객에 해당하는 3천 16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2024년도 과학관 관람료 수입(6,357만원)의 약 47.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7)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8)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에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9)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시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2조(정의))

< 제대군인 관람료 감면에 대한 비용추계 >

① 감면 예상인원 : 18,006명/년

| | | | |
|--------------------------|---------------|----------------------|-------------|
| 37,949명/년 (24년 유료관람객) | × 50% (남성) | × 94.9% (제대군인 비율) | = 18,006명/년 |
|--------------------------|---------------|----------------------|-------------|

※ 복무대상자 : 현역(1,2,3급) + 보충역(4급) / ※ 복무비대상자 : 전시근로역(5급) + 병역면제(6급)

※ 2014년~2023년 복무비대상자(5급 2.5%, 6급 0.3%) + 재신체검사 2.3% : 5.10% (출처: 병무통계연보)

② 평균 관람료 : 1,675원/명 ※ 일부 감면(50% 할인) 대상 반영

| | | | |
|------------------------|---|-------------------------|------------|
| 63,573천원 (24년 관람수익) | / | 37,949명 (24년 유료 관람객) | = 1,675원/명 |
|------------------------|---|-------------------------|------------|

③ 연간 수익 감소 예상액 : 30,160천원

| | | | |
|-------------------------------|---|------------------------|--------------|
| ① 18,006명/년 (제대군인 감면예상 인원) | × | ② 1,675원/명 (평균 관람료) | = 30,160천원/년 |
|-------------------------------|---|------------------------|--------------|

- 다만 「제대군인법」 제23조¹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대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람료 면제는 여성 및 병역 면제자 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인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¹¹⁾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대군인 전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요금을 면제한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강원특별자치도¹²⁾와 세종특별자치시¹³⁾가 박물관, 목포시가 과학관·박물관·문학관¹⁴⁾에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1) 이아영 외(2023). 「의무복무(단기복무 장교·부사관 포함) 제대군인 지원방안」, 국가보훈부.

12)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13) 세종특별자치시시립민속박물관

14)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목포문학관

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음.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규남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과학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립 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서울시는 동 시설들에 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황>

| 시설명 (감면 내용) | 발의(제출)자 | 감면 대상 | 심사 결과 |
|----------------------|---------|-----------|-----------------------|
| 서울시립박물관 (무료) | 김규남 의원 | 제대군인 | - 대안반영폐기 |
| | 서울시장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대안: 장기·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
| 서울시립미술관 (무료) | 김규남 의원 | 제대군인 | - 미상정 |
| | 서울시장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서울시립체육시설 (50% 할인) | 김규남 의원 | 제대군인 | - 대안반영폐기 |
| | 서울시장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대안: 장기·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

- 한편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과는 별개로, 과학관은 그 특성상 관람객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관의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
|-------|-----------|
| 입법조사관 | 연락처 |
| 신현두 | 2180-8055 |

[참고 자료]

<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관 >

| 지원대상 | 지원야 | 지 원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복무제대군인 (5년 미만) | 채용시향유 연령연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1년 미만 복무 : 1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경력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200인) 권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치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지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 이상 ~ 10년 미만) | 진출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1인당 120만원 한도, 총 3회가능, 자부담 10%) 직업능력개발 교육비(1인당 150만원 한도, 자부담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직 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 구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 취지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실시기관 보훈특별고용 실시(국가유공자 준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치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3년 이내자 지원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치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 면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주택</th> <th rowspan="2">사업</th> <th rowspan="2">농토 구입</th> <th rowspan="2">생활 안정</th> <th rowspan="2">학자 금</th> </tr> <tr> <th>아파트 분양</th> <th>주택구입 (신축)</th> <th>주택 임차</th> </tr> </thead> <tbody> <tr> <td>한도 (만원)</td> <td>4,000~ 8,000</td> <td>4,000~ 8,000</td> <td>2,000~ 5,200</td> <td>2,000</td> <td>3,000</td> <td>300</td> <td>학기당 500</td> </tr> <tr> <td>연리(%)</td> <td>3.5</td> <td>3.5</td> <td>3.5</td> <td>4.5</td> <td>3.5</td> <td>3.5</td> <td>4.5</td> </tr> </tbody> </table> | 구분 | 주택 | | | 사업 | 농토 구입 | 생활 안정 | 학자 금 | 아파트 분양 | 주택구입 (신축) | 주택 임차 | 한도 (만원) | 4,000~ 8,000 | 4,000~ 8,000 | 2,000~ 5,200 | 2,000 | 3,000 | 300 | 학기당 500 | 연리(%) | 3.5 | 3.5 | 3.5 | 4.5 | 3.5 | 3.5 | 4.5 |
| | 구분 | 주택 | | | 사업 | 농토 구입 | | | | | 생활 안정 | 학자 금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분양 | 주택구입 (신축) | 주택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도 (만원) | 4,000~ 8,000 | 4,000~ 8,000 | 2,000~ 5,200 | 2,000 | 3,000 | 300 | 학기당 500 | | | | | | | | | | | | | | | | | | | | | | |
| 연리(%) | 3.5 | 3.5 | 3.5 | 4.5 | 3.5 | 3.5 | 4.5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우선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택 우선공급(기관추천 아파트특별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주택법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치 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45호) 검토보고서(국회 정무위원회, 2024.11.)